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685
----------	-------

발의연월일 : 2026. 8. 21.

발 의 자 : 남인순 · 전진숙 · 강경숙
박상혁 · 송옥주 · 정춘생
이수진 · 황명선 · 권향엽
전종덕 · 김 윤 · 이상식
김남희 · 백혜련 · 임호선
한준호 · 박주민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범죄나 국회 회의 방해죄 등 일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대하여만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3년 간 임용이 제한되고,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벌금형만 확정되어도 당연퇴직되고 20년 간 임용이 금지되는 반면, 선출직 공직자는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아도 피선거권이 유지되어 그 직을 유지하거나 다시 출마할 수 있는 법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및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6호·7호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7.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

- 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選舉 日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者는 被選舉權 이 없다. 1. ~ 5. (생 략) <u><신 설></u>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 ----- ----- -----. 1. ~ 5. (현행과 같음) 6.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 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호에 따른 스톱킹범죄</u> 7. <u>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법</u>
<u><신 설></u>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
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
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
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